

# 국제 인권 동향

## Human Rights Worldwide

### 1. 유엔인권이사회 소식(1)

####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이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결의안 채택

7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해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모로코가 핵심 제안국으로,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등 65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는 2019년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결의의 후속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의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을 다뤘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당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회원국은 물론 다른 유엔기구와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신기술이 갖는 영향력, 기회, 도전과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전체적, 포용적,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과 모든 관계자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2. 유엔 회원국들이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체계와 법안을 도입할 때 인권을 최우선시하라는 유엔사무총장의 요청과 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인권실사 및 영향 평가에 대해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지침을 마련하라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에 주목한다.
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두 차례의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여 인권과 신기술의 기술표준 설정절차의 연관성과 기술기업 활동과 관련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실제 적용을 논의하고,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 제50차 회의와 제51차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4. 상기 전문가협의 및 보고서의 준비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다양한 지역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이들이 이미 수행한 관련활동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바인데, 이 때 관련자는 각 국,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자문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기구, 각자의 임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그 외의 표준개발기구, 사무총장 기술담당 특사 사무소를 포함한 관련유엔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술계, 학술기관을 포함한다.
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인권실사절차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기술의 구상, 설계, 활용, 개발 및 지속적 보급에 있어서 인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권교육과 시민사회 및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정부의 신기술에 관한 인권기반 법률과 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6. 지속적으로 본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https://undocs.org/A/HRC/47/L.12/Rev.1>

<https://news.v.daum.net/v/20210714004640378>

## 2. 유엔인권이사회 소식(2)

**유엔인권최고대표보고서: 감염병 및 다른 보건비상사태, 그에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발전 및 모든 인권 실현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핵심역할(부분번역)**

### 개요

감염병이나 그 밖의 보건비상사태 상황에서 국가의 핵심적 역할은 강력한 보건대응을 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및 보편적 사회보장이 모든 대응, 대비, 회복노력에 있어서 변함없는 구성요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 문제에 참여할 권리,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도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존중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보건제도와 국가경제의 회복탄력성이 상당부분 저하되었다. 각 국은 연대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공동의 방식을 통해 보건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법에 따른 각 국의 약속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달성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 대비, 대응, 회복에 있어서의 인권

코로나19 감염병은 보건비상사태의 대비, 대응, 회복노력에 인권기반 접근방식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인권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다 나은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권원칙을 기반으로 한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더욱 나은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1) 여성, 소외집단,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제도, 정책제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토절차 전체에 걸쳐 관련된 행위자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참여적이고 성인지적(gender-responsive)이면서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성, 소외집단을 차별하거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어렵게 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법률, 정책은 폐지 혹은 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2) 감염병이나 다른 보건비상사태 발생이 임박했을 때 여성, 소외집단, 잠재적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모든 단계에서 이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이나 정책은 여성이나 잠재적 취약계층을 명시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이들의 요구사항과 우선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 세부지역, 국제적 단위의 인권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초기에 인권침해가능성, 인권문제, 성별 특수성에 대해 경고할 뿐만 아니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을 촉진하고 소외집단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위기에 대한 공중보건, 경제, 사회적 정책대응에 평등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영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등영향평가는 정책이 갖는 실제적, 잠재적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책이나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5) 경기부양책은 인권적 관점에서 수립, 평가되어야 하고 재정, 경제개혁안은 젠더변환적(gender-transformative, 기존의 젠더 규범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젠더 평등을 지지하는 구조를 강화·생성하려는 접근방식)이면서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기구는 국제 금융기구나 공여기구의 차관이나 보조금이 의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가장 소외된 집단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7) 감염병이나 그 밖의 보건비상사태에 대한 국제적 접근방식은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8) 각 국은 특히 감염병 상황이나 보건비상사태 상황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해석 및 이행을 모범사례로 받아들인다.

<https://undocs.org/A/HRC/47/23>

### 3. 국가인권위원회 소식

#### 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 정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의 국제인권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대 핵심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한 자료 약 280여 건의 문서를 확보하여 심의 차수별로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인권조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총 7개, 미가입 2개)

정부는 총 9개의 주요 인권조약 중 7개 인권조약에 가입·비준하였고, 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이행 조치(입법적·행정적·사법적)에 대해 해당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이 조약기구들은 정부보고서, 인권위 및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우리 정부에 권고(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한다.

조약기구가 1981년부터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그동안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조약기구의 최초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심의절차 및 심의차수별로 재정비하였다. 이렇게 정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조약기구의 권고내용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정책입안, 법률 제·개정, 재판 판단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옹호자와 국민들에게는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관련 내용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되려면, 먼저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인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는 올해 설립 제 20주년을 맞이한 인권위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노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각 조약기구의 정부보고서 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게시하여 국내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인권위 누리집 - 정책정보 - 국제인권 - 국제인권규범(조약탭 검색)

출처: 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간 정부 대상 권고 총정리 (인권위 보도자료)

### 4. 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위원회

일시	회의명
2021/8/24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 UN

일시	회의명
2021/6/21-7/9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
2021/9/13-10/1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
2021/11/1-11/12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